

# 해양오염방지법



金鐘敏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

## ◇ 해양오염방지법의 개정

### 1. 개정취지

해상운송 및 연안의 개발·이용 등이 증가됨에 따라 대량 유류오염사고가 빈발하기 때문에 연안 해역의 오염심화가 우려되는 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름유출사고의 예방 및 방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고, 최근 주요국가들이 수락·채택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의 주요내용을 수용하는 등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1. 3. 8 법률제4365호로 동법개정법률을 공포하여 1991. 9. 9부터 시행했다.

###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 또는 인명의 구조를 위한 불가피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이를 운반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나.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을 저장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 대량기름유출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관계기관간에 긴밀히 협조하여 긴급방제 등 오염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소속해양오

염 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경찰대장소속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라. 선박의 무리한 운항과 부주위 등으로 인한 대량기름유출사고로 기름을 배출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 3. 해양오염방지법 해설

#### 〈해양오염방지법〉

이 법의 내용은 ① 총칙분야 ②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③ 선박의 해양오염설비 등의 검사 등 ④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⑤ 폐유처리·청소업 등 ⑥ 해양오염방제조치 ⑦ 보칙 및 법칙으로 구분된다.

#### ① 법의 목적

이 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 등에서 해양에 배출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②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1)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기름, 화물류가 섞인 유조선의 물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나 세정된 유조선의 화물창의 물밸러스트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5조)

2) 기름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  
선박소유자는 당해 선박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기름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6조)

3)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적재 제한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선박으로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의 화물창과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연료유탱크에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밸러스트를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7조)

4) 선박안의 유성혼합물 및 폐유의 처리 등  
선박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 폐유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박안에 저장하거나 폐유처리시설·자가처리시설·저장처리시설에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밸러스트, 세정수 또는 선저폐수를 그 배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처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8조)

나.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규제

1)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유해액체물질의 산적 운반에 이용되고 있는 화물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기름, 화물류가 섞인 유조선의 물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및 선저폐수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한 경우나 세정된 유조선의 화물창의 물밸러스트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세정도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창으로 부터 공동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에 따라 세정된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나 공동부령이 정하는 배출해역에서 공동부령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11조)

2) 유해액체물질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선박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검정 또는 인정을 받은 기름오염 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3) 선박으로부터의 미평가액체물질의 배출규제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미평가액체물질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미평가액체물질을 선박으로 선적하려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양환경에 유해한지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법 제14조)

다.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1)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에서 선박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한 폐기물의 배출을 제외하고는 선박으로부터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선박내에서 발생하는 분뇨, 공유수면매립 및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을 총리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 16조)

2) 폐기물의 해양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

선박의 소유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으로 부터 형식승인 및 감정 또는 인정을 받은 폐기물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3) 폐기물운반선

가) 운반선의 등록

폐기물의 배출해역 지정을 받은 자가 선박을 폐기물의 운반 및 배출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환경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18조,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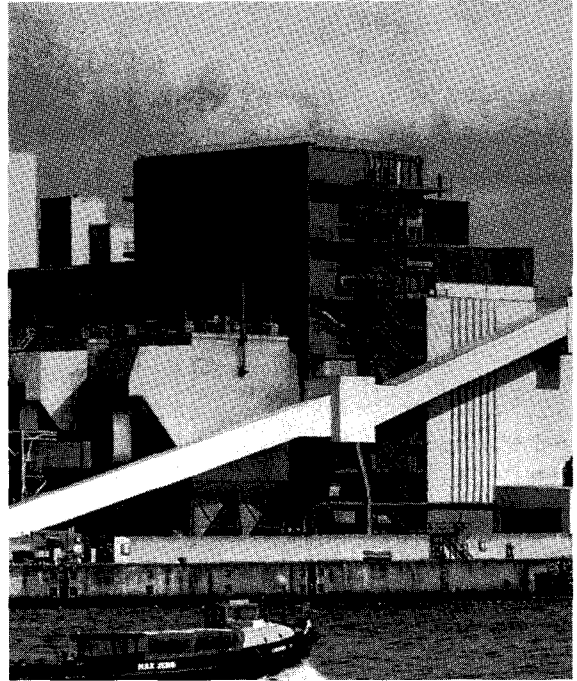
- (1)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 (2) 사업계획서
- (3) 선박의 설비·구조에 관한 사항
- (4) 선박명, 선박의 종류, 총톤수 및 항행가능 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 (5) 선박의 일반배치도
- (6)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 (7) 폐기물의 수집·저장·운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나) 변경신고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폐기물운반선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폐기물의 운반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또는 폐기물운반선을 폐기물운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20일 이내에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1항, 시행령 제7조)

다) 폐기물 적정처리 명령

환경처장관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폐기물운반선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폐기물운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때에는 당해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할 수 있다. (법 제19조 제2항)

4) 폐기물 위탁자의 의무 등

제품의 생산 등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을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위탁일 15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같다. (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

가)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위탁가능한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폐기물시험성적서

다)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

③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가. 선박검사

기름오염방지설비, 유해액체물질 오염방지설비 또는 폐기물오염방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과 기준에 적합한 화물창을 설치하여야 할 선박의

소유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 또는 화물창에 대하여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이 행하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하고, 해양오염방지 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법 제24조 및 제25조)

#### 나. 선박검사의 대형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다. 불합격 선박에 대한 조치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해양오염 방지설비 등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당해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양환경의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지처분을 한다. (법 제29조)

#### 라. 해양오염방지증서 등의 유효기간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지증서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안에서 그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30조)

#### 마. 선박의 재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를 받은 자가 그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재검사 신청을 한 자는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관련부분의 원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31조)

#### 바. 외국선박에 대한 특례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영토에 접속되는 해역만을 항행선박, 나용선한 외국선박 및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양수 또는 용선한 어선을 제외한 외국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2조)

#### 사. 외국선박의 감독

해운항만청장은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이 국제협약에 의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교체·개조 또는 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 제33조)

④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가.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금지

누구든지 해양시설로부터 해양시설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는 해양시설 안에 있는 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등 폐기물,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및 광재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해역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34조제1항 내지 제4항)

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은 폐유처리시설, 자가처리시설 및 저장·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34조 제5항)

#### 다. 해양시설의 설치등록

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5조, 시행령 제10조)

- 1)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 2) 해양시설의 설비 및 구조에 관한 서류
- 3) 해양시설 설치도
- 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기름 등 폐기물의 처리 계획서
- 5) 해양사고에 대비한 응급조치계획서
- 6) 기타 총리령, 내무부령 및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

#### ⑤ 폐유처리·청소업 등

가. 폐유처리·청소업의 허가

폐유처리시설을 갖추고 폐유를 수거하여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폐유처리업 또는 유창

청소시설을 갖추고 선박의 유창청소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를 수거하는 유창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 제37조, 시행령 제13조)

- 1) 정관과 법인등기부 등본
- 2) 사업계획서
- 3) 폐유처리시설 공사 설계서
- 4) 시설장비의 목록 및 설명서
-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6)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 7) 기타 공동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폐유처리·청소업 개시의 신고

폐유처리·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후 10일 이내에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다. 수거된 폐유의 처리 등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유출된 폐유를 수거한 자는 폐유처리시설, 자가처리시설 또는 저장·처리시설에서 이를 처리하되, 폐유처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폐유의 인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40조)

라. 폐유처리시설의 유지

폐유처리·청소업자가 설치하는 폐유처리시설 또는 유창청소시설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폐유처리업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폐유처리방법에 적합하도록 폐유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 제41조)

마. 폐유처리·청소자의 조업정지 등

해운항만청장은 폐유처리시설 또는 유창청소시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유처리·청소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한다. (법 제42조)

바. 휴업·폐업의 신고 등

폐유처리·청소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해운항만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운항만청장은 신고한 자가 처리하여야 할 폐유를 처리하지 아니하고 저장시설 등에 남겨 놓고 있을 때에는 당해 폐유의 적절한 처리를 명한다. (법 제43조, 시행령 제20조)

사.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육상에 자가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 등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5조)

아. 저장·처리시설 등의 설치·운영

항만관리청은 당해 항만을 입·출항하는 선박과 해양시설로 부터 발생하는 기름 등 폐기물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는 저장·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한다. (법 제46조)

⑥ 해양오염 방제조치

가.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 배출신고

기름 등 폐기물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해양에 배출된 경우와 그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될 경우 배출 선박의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선박 또는 시설의 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나 기름 등 폐기물이 해면에 퍼져 있는 것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47조, 시행령 별표 2)

나.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1) 방제조치의무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또는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로써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의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 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는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선장이나 시설의 관리자 또는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로써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의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와 배출된 기름 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고,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의 사용자,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신속히 수거·처리하는 등 필요한 방제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2) 방제조치명령

내무부장관은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자에게 방제조치를 하도록 명한다. (법 제48조제3항)

3) 방제조치 협조의무

대량의 기름이 항내 또는 항의 부근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된 경우 당해 항구가 배출된 기름의 적재항일 때에는 당해 기름의 송화인, 당해 항구가 배출되는 기름의 양육지일 때에는 당해 기름의 수화인이, 선박이 계류 중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가 방제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법 제48조제4항)

4) 방제에 사용하는 약제 등의 승인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할 때 사용하는 자재 및 약제는 환경처장관의 형식승인·검정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법 제48조 제5항)

다. 자재 및 약제의 비치

항만관리청,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 설치자는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선박·해양시설 또는 보관시설안에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법 제49조)

환경관리인. 1991.12

라. 방제비용의 부담

내무부장관은 방제의무자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해양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방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요비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킨다. (법 제50조)

마.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설치

기름 등 폐기물의 유출사고 등 해양오염사고로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피해가 있거나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해양경찰대장 소속하에 지역해양오염방지대책협의회를 둔다. (법 제51조)

바. 재산의 처분

내무부장관은 연안해역에 배출된 대량의 기름 등 폐기물에 의하여 해역이 심하게 오염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하고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수산업 등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범위안에서 기름 등 폐기물이 적재되어 있는 당해 선박의 파괴, 배출되는 기름 등 폐기물의 소각외에 그 기름 등 폐기물이 있는 현장인근의 해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법 제52조)

⑦ 보칙

가. 폐선 및 선박해철의 규제 등

누구든지 수심이 1,500미터 이상인 해역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버리는 경우나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어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무부장관이 인정한 조난선박을 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을 버려서는 아니되며,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해철 및 이와 관련된 작업과정에서 기름 등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하도록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이를 행하여야 한다. (법 제53조, 시행령 제36조)

1) 깊은 수심, 빠른 유속 등 자연조건으로 인하여 제거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2) 인양 또는 구난작업시 심각한 해양오염 발생

이 예상되는 경우

3) 해저에 완전히 가라앉아 다른 선박의 안전항행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해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경우

4) 기타 선박소유자가 제거하기 곤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나. 오염방지관리인

1) 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공동부령이 정하는 선박소유자 및 해양시설 설치자는 해양시설 및 선박마다 기름 등 폐기물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2) 선박에 임명할 오염방지관리인의 구분

가) 유해액체물질을 선적하여 운반하는 선박  
기름 및 폐기물의 오염방지관리인과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각 1인

나) 그외의 선박

기름 및 폐기물의 오염방지관리인

3) 임명 증빙서류의 비치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증빙서류를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한다.(법 제54조제3항)

다.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명령 등

선박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입출항금지 기타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58조)

라. 해역의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오염물질 등의 퇴적으로 인하여 연안수질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의 제거 등 준설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항만구역·공유수면 또는 어항구역의 해역에 대량 기름유출사고를 제외한 오염이 있을 때에는 그 해역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의 장은 방제에 필요한 자재 또는 약제 등을 사용하여 이를 신속히 제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 부령이 정하는 기름 등 폐기물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양을 초과하여 배출함으로써 오염을 야기

한 원인행위자가 확인된 때에는 그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법 제59조)

마. 해역별 수질기준

환경처장관은 해양환경의 적정한 보전을 위하여 해역의 자연지형·용도 및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어 해역별 해수의 수질기준을 설정·고시한다.(법 제60조)

바. 연안오염의 방지

1) 연안오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

환경처장관은 연안오염상황 및 오염원의 조사 등을 위하여 오염측정망을 설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법 제61조제3항)

2) 폐쇄성 해역의 오염방지

환경처장관은 폐쇄성 해역 등이 오염되어 해역별 해수의 수질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어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오염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육지에 접속한 일정한 해역을 연안오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며,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안에서는 그 해역의 이용 등의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연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다.(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

⑧ 청문제도

환경처장관·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청문대상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청문대상처분에는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취소 또는 운반선의 사용정지, 선박의 운행정지처분, 폐유처리·청소업의 조업정지명령, 폐유처리·청소업의 허가취소 및 형식승인의 취소가 있다.(법 제66조)

⑨ 행정벌

이 법에서 정한 각종 행정명령의 불이행 및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행정형벌이나 행정질서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규정을 두었으며,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해당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71조 내지 제80조) ◻